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 기준 제시

-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이 중복되어 부정확한 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부분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하는 규정 개정(안 제12조)

나.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

- 구미시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때 10%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삭제(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3.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우천, 가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제1항제2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제1항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4. 제1항제4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구미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3.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우천, 가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등 시설물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 략) 제13조(원상복구 등) ① (생 략) ② <u>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u>	1. <u>제1항제1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u> 2. <u>제1항제2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u> 3. <u>제1항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u> 4. <u>제1항제4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원상복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소관 실·과		건 설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상 곤
	담 당	정 연 상
	담 당 자	권 기 환 (480-5393)